

의안번호	2213885
의 퇴 인	황정아의원
회 답 일	2025. 11. 20.
추 계 번호	25B59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음(제4항)	
		※ 현행 민·관합동조사단의 구성 사유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나, 개정안은 구성 사유를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그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으로 확대함	재량·의무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제6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8조의5(침해사고의 신고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그 피해규모와 과징효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음(제1항) 1.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4.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제5항)	의무규정
3	안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신설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8조의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8조의5(침해사고의 신고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신설	
	안 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신설	

2. 상세 사유

-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해당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안 제48조의4)
 - 현행법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따른 소요비용은 민간위원 수당(여비 및 필요경비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로 최근 3년간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민간위원 수당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민·관합동조사단의 민간위원 지급 수당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²⁾ 등을 근거로 위원별 조사단 회의 참여 횟수, 자료제출 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함

[표 1] 최근 3년간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민간위원 수당 지급 현황

구 분	2023년	2025년	
구성 횟수	1회	2회	
활동 기간	'23. 1. 18. ~ 5. 31.	'25. 4. 23. ~ 7. 4.	'25. 9. 9. ~
조사 대상	(주)엘지유플러스	(주)SK텔레콤	(주)케이티

1)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8조(수당) 조사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 분	2023년	2025년	
피해 내용	약 30만건 개인정보유출	약 2,969만 건 이상의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	불법 펌토셀 통해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22,227명 유출 정황
조사단 구성	12명 •(공무원 등) 과기부 3명, KISA 5명 •(민간위원) 4명	23명 •(공무원 등) 과기부 6명, KISA 11명 •(민간위원) 6명	30명 •(공무원 등) 과기부 5명, KISA 18명 •(민간위원) 7명
민간위원 지급 수당	총 500만원 (인당 평균 125만원)	총 1,060만원 (인당 평균 177만원)	조사 진행 중

주: 2024년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내역 없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해당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해사고 발생 여부 및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의 발생 건수, 민·관합동조사단의 민간위원 구성 수 및 민간위원 지급 수당의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향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의 발생 건수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수는 그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결정되며,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위원별 조사단 회의 참여 및 자료제출 횟수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상반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해사고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침해사고 신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상반기 기준)
건 수	1,277	1,887	1,03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상반기)’

□ 침해사고 관련 미신고·지연 신고, 관련 자료 미보전,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출입 및 조사의 방해·거부·기피 등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적용 특례(안 제48조의5 및 안 제77조)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미이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침해사고 관련 미신고·지연 신고, 관련 자료 미보전,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출입 및 조사의 방해·거부·기피 등’ 침해사고 관련 의무를 미이행한 자(이하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 * 개정안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그 피해 규모와 과징효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3]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

구 분	현행	개정안
침해사고 발생사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그 피해 규모와 과징효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다만, 해당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망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그 피해 규모와 과징효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자료: 현행법 및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제재조치 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의 증감, 위반행위자의 매출액 등을 예측할 수 없으며, 개정안은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과징금 수입의 증가 및 과태료 수입의 감소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근 5년(2021년~2025년 11월 현재)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액은 다음과 같음

[표 4] 최근 5년간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액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1월 현재)
침해사고 발생사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	-	-	27건 (총 159.7백만원)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	-	-	-	-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	-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